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안 제11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총 체납액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조례 신설(안 제13조의2)
-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자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 하도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 할 수 있는 기회 부여(안 제22조제1항)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 부과 시 전액부과 하도록 개정(안 제27조의3 제2항 제3호, 제90조 제2항 제3호 단서신설)
-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형평문제 해소를 위한 조문정비(안 36조제3항)
-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안55조)

3. 참고사항

-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 경상북도 재정과-2746(2006. 2. 8) 지방세 조례 정비 안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3 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제1호중 “민법”을 “「민법」” 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제1항중 “법 제229조1항 및 제2항에서”를 “법 제229조 1항에서”로 한다.

제90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소액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신 설 >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됨에 따른 관련조례 신설
제22조(수정신고납부)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하고 납부할 수 있다.	소득할주민세 납세지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규정

②·③ (생략)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생략)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단서 신설> 4.5(생략) ③(생략) 제36조(납세의무자) ①·②(생략) <신 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현행과 같음)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산출세액이 5만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4.5(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36조(납세의무자) ①·②(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조례2조에서 과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 불필요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전액부과 차량공매인도 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
---	--	---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55조(세율)①----- --- <u>법 제229조제1항에서</u> ----- -----.	담배소비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생략)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단서신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현행과 같음) ②----- -----. 1.2.(현행과 같음) 3.----- ----- ----- -----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종세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통일을 기하기 위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소득세 등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 등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구법】

제229조 (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②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신법】

제229조(세율)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 가. 제1종 쥘런 20개비당 641원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 다. 제3종 엽쥘런 50그램당 3,270원
 - 라. 제4종 각런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삭제(2005.12.31)